

4.3.22 자율학습운영규정

제정 2011. 09. 02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교”라 한다)의 자율학습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자율학습목표) 산업대학의 설립취지에 입각하여 학생의 수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자율학습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.

제3조(자율학습) ① 자율학습은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이수하는 학습을 뜻하며, 본교에서 시행하는 자율학습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

1. 사전평가 : 이론 교과목에 대한 학력을 사전에 평가 받는 제도
2. 현장학습 : 실습 교과목에 대한 학습을 산업현장에서 이수하는 제도
3. 과제학습 : 출석수업과 과제물 등으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
4. 임시과제학습 : 일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과제물에 의한 학습평가를 받는 제도

② 자율학습신청서는 학(부)과장에게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
③ 자율학습은 해당 학(부)과의 학년별로 20% 이내의 인원 범위 내에서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(부)과의 특성에 따라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학(부)과 교수회의를 거쳐 매학기 개강 1주일 전까지 학과에 제출하여 교무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 학기 진행 중 자율학습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발생 이후 학습에 대하여 자율학습을 신청 및 허가할 수 있다.

⑤ 자율학습의 신청 및 허가기간은 해당 학기에 국한한다. 단, 임시과제학습은 예외로 한다.

제4조(사전평가) ① 사전평가의 신청자격은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과 관련된 종목으로서 기사 1급 이상에 상당하는 자격을 소지하였거나 관련된 전문직으로서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.

② 사전평가 대상자는 학기초에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여하는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, 학기말에 이를 제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③ 서류심사에 통과하고, 해당 학(부)과에서 출제한 시험에서 70점 이상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 교과목의 학점을 인정한다.

제5조(현장학습) ① 현장학습의 신청자격은 실험실습 교과목과 관련된 내용의 직무를 산업체에서 담당하면서 학기 중 교과담당 교수로부터 지도를 받아가며 수강 신청한 실습교과를 효율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.

② 현장학습은 교과목담당교수가 사실을 확인한 후 총장의 승인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.

③ 현장학습은 교과목담당교수의 지도를 통하여 현장학습일지를 기록해야 하며, 학기를 마친 후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6조(과제학습) ① 과제학습의 신청자격은 직장인 또는 전출 등으로 원거리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근무의 사정 등으로 계속 출석수업이 곤란한 자로 한다. 단, 고령자와 사회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.

② 과제학습을 이수하는 자는 학기 중에 실시하는 중간고사 및 기말고사에 응시하여 평가를 받아야 한다.

- ③ 과제학습은 교과목담당교수가 학기초에 4회 이상의 과제를 부여하거나 전산매체를 통하여 지도한다.
- ④ 과제학습의 성적 배점은 정기평가 50점, 과제 50점으로 한다.
- ⑤ 자율학습자의 성적은 선이수 교과목의 경우 B+학점(85~90)이하로 하고, 그 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B(80~84)이하로 한다.
- ⑥ 과제학습의 출석인정은 교과목의 전체 수업시간의 100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.
- ⑦ 자율학습자의 평가자료는 담당교수가 1년간 보관해야 하며, 교무처의 요구시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임시과제학습) ①임시과제학습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허가할 수 있다.

1. 직장 근무자로서 출장명령 또는 직장 연수 등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자
 2.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입원 등으로 5일 이상 계속하여 출석이 불가능 한 자
 3.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출석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전항의 사유로 임시과제학습이 필요한 경우 출석의뢰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과목담당교수의 승인을 얻어 과제물 등을 통하여 출석을 인정한다.
- ③ 과목별 임시과제학습 허용기간은 출석의뢰서의 제출일을 포함하여 학기별 3주 이내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